

『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맞게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, 표준하역비의 대상이 되는 규격출하품을 명확히 규정하며 기존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조례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상위 법령인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에 맞게 유효기간을 변경(안 제8조, 제25조)
 -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 : 5년 → 5년 이상 10년 이하
 -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 : 5년 → 5년 이상 10년 이하
 - ※ 법인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
-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(안 제26조)
 - 현행 : 재허가 → 개정 : 갱신허가

- 표준하역비 부담을 위한 규격출하품에 대한 형태 규정(안 제85조)
- 「민법」 개정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임원 요건과 관련하여 부칙에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(부칙 개정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, 「민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도매시장법인 지정 및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기하고 표준하역비 부담을 위한 규격출하품에 대한 형태를 완전규격출하품으로 규정함으로써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